

니다.

이번 定期會에서 평소 여러 委員님들의 자상한 關心과 支援으로 우리 서울市の 低所得 市民의 自活基盤을 造成하고 또 産業技能人力을 養成하는 그런 機能을 擔當하고 있는 5個 市立職業訓練院의 名稱變更條例案을 上程하게 된 데 대해서 說明을 올리겠습니다.

委員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職業訓練事業은 1953년에 서울特別市の 少女職業輔導所, 또 少年技術院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당시에 浮浪兒 등 不遇靑少年을 善導할 目的으로 技術教育을 실시한 것이 그 母體가 되어서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産業機能의 人力을 養成하는 職業訓練機關으로서 地域社會 經濟發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社會의 뿌리 깊은 技能人에 대한 경시풍조와 또 과거의 선입견 때문에 訓練院에 대한 收容施設이라는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서 出身 訓練員들이 멋뻐하게 생각하지 못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市立職業訓練院生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스스로 자긍심을 높여서 訓練成果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서울市는 72年 7月 8日 勞動部에 訓練院에 대한 名稱變更을 建議했던 바 職業訓練院을 職業專門學校로 變更할 수 있도록 職業訓練基本法이 93年 12月 27日字로 改正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名稱變更條例案을 提出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改正案에 上程된 條例는 서울市 直營靑少年 職業訓練院에 관한 서울特別市立靑少年 職業訓練院設置條例와 서울市가 職業訓練을 委託하고 있는 民間委託訓練機關인 서울綜合職業訓練院, 漢南女子職業訓練院, 서울特別市立 上溪職業訓練院, 또 서울特別市立 엘림職業訓練院에 관한 條例인 서울特別市立社會福祉施設等設置및委託運營에관한條例로써 改正案의 內容은 職業訓練院을 職業專門學校로, 또 院長은 校長으로 變更해서 市民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專門性과 質的인 訓練機關의 이미지를 提高하고자 하는데 目的이 있습니다.

委員님들의 애정어린 指導와 檢討로 이 案

이 확정되면 來年 1月 新學期부터는 職業專門學校로 學生들을 募集해서 새로운 각오로 헌신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條例案 上程에 대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敏國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贊穆 專門委員 나오셔서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贊穆 專門委員 李贊穆입니다.

.....
(報告)

1994年 11월 8日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립靑少年職業訓練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직업훈련시설의 명칭이 개정('93.12.27.)된 직업훈련기본법 제18조의4에 의하여 현재 서울에서 운영하는 靑少年職業訓練시설의 명칭을 직업훈련원에서 “직업전문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서울특별시립 靑少年職業訓練원의 명칭을 서울특별시립 靑少年職業전문학교로 개정 (안 제1조 내지 제4조)

○훈련원의 원장을 교장으로 개정하는 것임 (안 제3조)

3. 관계법령

○직업훈련기본법 제18조의4

4.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내용에서 직업훈련원을 “직업전문학교”로, 원장을 “교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직업훈련원의 명칭변경은 시민들이 종전의 불량靑少年들의 수용시설로 인식하는 부정적인 시민의식을 바꾸어 기능인의 자부심을 갖게 하고, 직업靑少年들로 하여금 미래의 발전지향적인 희망을 갖게 함으로써 직업교육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기술교육으로 정착시키는데 그 참된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미진학 靑少年들에게 “직업전문학교” 학생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주어 면학분위기

<p>를 고조시키어 우수한 기능인의 육성과 산업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는 직업훈련원을 직업전문학교로 변경하는 것은 산업사회의 환경에 맞는 적절한 명칭인 것으로 생각됩니다.</p>	<p>많이 봤을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參考해 주시기 바랍니다.</p>
<p>.....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p>	<p>○委員長 李敏國 局長님께서서는 李昌根委員님의 말씀을 깊이 參考해 주시기 바랍니다.</p>
<p>○鞠應好委員 檢討事項 中에 하나 質問하겠습니다.</p>	<p>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p>
<p>專門委員, 그것이 教育法上과 서로 相衝되는 問題點을 檢討해 봤어요?</p>	<p>이상으로 質疑答辯을 終結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特別市立靑少年職業訓練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p>
<p>○專門委員 李贊穆 네, 이 職業訓練院은 教育法하고는 관계 없고, 다만 職業訓練基本法하고만 관계 있습니다.</p>	<p>(「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p>
<p>○鞠應好委員 基本法에 의해서 根據가 되는데 教育法과 相衝되는 점은 檢討 안해 봤어요, 관계 없어요?</p>	<p>..... (參 照)</p>
<p>○專門委員 李贊穆 教育法은 檢討했는데 이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p>	<p>서울특별시립靑少年職業訓練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靑少年職業訓練원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委員長 李敏國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提案說明과 檢討報告를 잘 들었습니다.</p>	<p>제명 중 “직업훈련원”을 “직업전문학교”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립靑少年職業訓練원(이하 “훈련원”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립靑少年職業전문학교(이하 “전문학교”라 한다)로” 한다.</p>
<p>그러면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하실 委員님 있으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p>	<p>제2조 중 “훈련원은”을 “전문학교는”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원장)”을 “(교장)”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훈련원에 원장1인”을 “전문학교에 교장1인”으로 하며, 동조 제2항 중 “원장”을 “교장”으로 한다.</p>
<p>李昌根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p>	<p>제4조 중 “훈련원”을 “전문학교”로 한다.</p>
<p>○李昌根委員 李昌根委員입니다. 언뜻 얘기들으면 職業訓練院生이라든가 이런 분한테 상당한 배려를 執行部에서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친다면 昨年 12月 27日 同 法이 改正되었으면 진작 이런 것을 했어야 옳지 이렇게 압박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미리 미리 했으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p>	<p>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왜냐 하면 今年에 職業訓練院을 우리가 視察을 가봐도 거기에서도 院長님들이라든가 거기 선생님이 그런 얘기가 今年에도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는데 이렇게 촉박하게 하지 않고 진작 했으면 今年에 우리가 視察가서도 그분들한테 좀더 希望的인 모습을 더</p>	<p>3. 서울特別市立社會福祉施設等設置및委託運營에 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1時 36分)</p>
	<p>○委員長 李敏國 議事日程 第3項 서울特別市立社會福祉施設等設置및委託運營에 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産業經濟局長께서는 提案說明을 해 주시기 바</p>